

## 감봉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 [1심]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판결선고일	2019. 5. 16.	비고	
사건개요	<p>○ 원고는 5건의 사립 특성화고 강의에 대하여 외부강의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제1징계사유), 2017. 5. 24. A고등학교 교직원 특강을 실시하면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한도액을 초과하여 49만원의 강의료를 받고도(한도 45만원, 초과 4만원) 초과금액을 반환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제2징계사유).</p> <p>○ 이 사건 징계사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해당되고, 제2징계사유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2. 26.자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음.</p> <p>○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1.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9. 19.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의 정도가 다소 무겁다고 보아 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원고는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p>		
주 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li> <li>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li> </ol>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6. 원고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p>○ 원고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하지 않은 5건의 사립특성화고 외부강의는 원고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li> <li>- 외부강의와 관련한 출장신고는 외부출장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일 뿐,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구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외부강의 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li> <li>- 피고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적극적인 교육·안내를 실시하고, 2016. 11. 28.자 공문을 통하여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는 등의 내용을 안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사립학교 외부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의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li> </ul>		

- 원고는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수수 금지의무 위반 및 제8조 제2항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존재함.
  - 원고가 A고등학교로부터 수수한 외부강의 사례금은 490,000원임.
  - 원고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을 알지 못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A고등학교로부터 외부강의 사례금을 송금받을 무렵에 그 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는 외부강의 사례금을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수하였고, 피고에게 이를 신고 하지 않고, 그 초과분을 A고등학교에 지체없이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청탁 금지법 제10조 제1항의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수수 금지의무 및 제10조 제5항의 신고 및 반환의무 위반에 해당됨. 또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의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사례금을 의미하고, 원고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초과분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금지위반에 해당됨.
  - 원고의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수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에 해당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로 볼 수 있으므로,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제2조 제3항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수 있는 비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이 징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고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일반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추어야 함.
  - 이 징계사유는 청탁금지법 등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징계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고 (가장 가벼운 징계인 감봉을 선택하였고, 감봉기간도 1개월에 그침), 징계기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원고는 장기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바가 있으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비위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징계로 감봉 1월을 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교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않고 소속 학교장으로 하여금 주의 조치 등을 하도록 한 사례가 있으나, 외부강의 신고의무 위반뿐만 아니라 외부강의 사례금 초과수수 금지의무 위반도 징계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과는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